

오스트리아 언론법

세계 각국은 언론자유와 타법익과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언론관계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스트리아 언론법은 합리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지는 언론관계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오스트리아 언론법을 번역, 소개합니다. 번역은 서울민사지방법원 박용상 부장판사와 서울고등법원 양삼승 판사가 수고해 주셨습니다.....편집자 주

전문

연방의회는 다음 법률을 의결하였다.

이 연방법은 자유로운 의견진술과 정보에 관한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환전한 언론매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행사에 의무와 책임을 수반하는 언론매체의 자유(Medienfreiheit)의 제한은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인권협약(BGBl, Nr, 210/1958) 제 10 조 제 2 항에 제기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된다.

제 1 장

개념규정

제 1 조 개념규정

1. 본 법에서 사용하는 규정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1) 언론매체(Medium) ' 대량 제작 또는 대량전파의 방법으로, 언어, 문자, 음향 또는 상형에 의해 다수인에 대하여 사상적 내용의 전달 또는 연출을 전파하기 위한 모든 수단
- (2) 정기적 언론매체(Periodisches Medium): 정기적인 언론제작물, 방송프로 또는 최소한 연 4 회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전파되는 기타의 언론매체
- (3) 언론제작물(Medienwerk): 다수인을 상대로 한 대량제작절차에 의한 언론매체에 의하여 복제된 사상적 내용이 담긴 보도 및 연출의 전달체.
- (4) 인쇄물(Druckwerk): 보도와 연출이 오로지 문자 또는 정지화면에 의해 전파되는 언론제작물
- (5) 정기적인 언론제작물 또는 인쇄물: 동일한 제호 아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최소한 연 4 회 이상 계속하여 발행되는 언론제작물 또는 인쇄물로서 그 각개의 호가 각각 완결된 형태를 취하든 않든 그 내용에 따라 상호연관을 갖는 것.
- (6) 언론기업(Medienunternehmen): 언론매체의 내용적 형성을 준비하고 그 제작 및 전파를 행하거나 이를 행하게 하는 기업.
- (7) 통신업(Mediendienst): 언론기업에 언어, 문자, 음성 또는 상형으로 기사를 계속적으로 조달하는 기업.

(8) 언론기업주(발행인)(Medieninhaber, Verleger): 언론기업 또는 통신업을 경영하거나 기타 개개 언론작품을 유통시킴으로써 언론제작물의 반포(Erscheinen)를 행하는 자.

(9) 간행인(Herausgeber): 정기적인 언론매체의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자.

(10) 제작자(Hersteller): 언론제작물의 대량제작을 행하는 자.

(11) 언론종사자(Medienmitarbeiter): 언론기업 또는 통신업에서 언론매체 또는 통신업의 전달의 내용적 형성에 기자로서(journalistisch) 종사하는 자로서 언론기업 또는 통신업에 고용되어 있거나 자유직업인으로서 기자로서의 업무를 경제적으로 중요치 않은 부업으로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행하는 자.

(12) 언론내용범(Medieninhaltsdelikt): 다수인에 대한 보도 또는 연출로서, 언론매체의 내용에 의해 범해지고 법원의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

2. 통신사의 통신을 받아 개개 언론매체가 복제한 통신사의 보도도 역시 언론제작물에 속한다. 그리고 통신사의 보도는 그 제공의 기술적 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언론매체로 간주된다.

제 2 절 기자의 직업활동의 보호: 편집규약

제 2 조 확신의 보호(Überzeugungsschutz)

1. 모든 언론종사자는, 그의 확신이 제 25 조의 의미에서 공표된 언론매체의 기본적 방향에 반하지 않는 한, 기본적인 문제나 기자직의 원칙에 관한 자신의 확신에 반하는 기사나 연출의 내용적 형성에 협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타인의 기사나 연출의 기술적 편집적 작업과 뉴스업무는 거부될 수 없다.

2. 언론종사자는 정당한 거부로 인하여 하등의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3 조 기명기사의 보호

기사나 연출이 의미내용에 관련되도록 수정되는 경우에는, 그 언론종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그의 이름으로 공표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작자의 가명이나 기호의 표시는 작자의 이름의 표시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제 4 조 공표강제의 불가능성

전조의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론종사자가, 그가 작성한 기사나 또는 그가 내용적 형성에 관여한 연출의 공표를 강요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 5 조 편집규약(Redaktionsstatuten)

1. 언론기업과 통신업에서는 저널리즘 사항에 있어서의 협력을 규율하는 편집규약이 체결될 수 있다.

2. 편집규약은 언론기업주(발행인)와 편집총회에서 비례대표의 원칙에 따라 선출하는 편집대표 간에 협정된다. 그 협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편집총회에서 3분의 2 가 찬성한 승인을 요한다. 상근의 언론종사자는 모든 위 편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3. 노사협의회(Betriebsrat)의 권한은 편집규약의 규정 때문에 영향 받지 아니한다.

4. 편집규약의 일반적 원칙은 언론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고용주의 집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단체간에 협정될 수 있다.

제 3 절 인격권의 보호

제 6 조 명예훼손, 모욕

1. 언론매체에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Üble Nachrede), 모욕(Verspottung) 또는 담체적 명예훼손(Verleumdung)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실현되면 피해자는 언론기업주(발행인)에게 피해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배상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한편으로는 공표행위의 범위 및 효과를 참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기업의 경제적 존립유지를 참작하여야 한다. 배상액수는 5 만 실링을 넘지 못하며, 비체적 명예훼손이나 특히 중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10 만 실링을 초과하지 못한다.

2. 다음의 경우 제 1 항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 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총회, 주의회 또는 이들 일반적인 대표기관의 위원회의 공개회의의 심의에 관한 사실에 충실한 보고인 경우

(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③ 공표가 진실하거나

④ 공표에 관하여 우월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고, 기사의 작성자가 고도의 저널리즘적 주의를 다함으로써 그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충분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3. 공표가 고도의 사생활영역(höchstpersönliche Lebensbereich)에 관련되는 경우, 제 1 항의 청구권은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항 제 2 호 a 목의 경우에만 배제되며, 제 2 항 제 2 호 a 목의 경우에는 공표된 사실이 공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7 조 고도의 사생활영역의 침해

1. 언론매체에 어떤 사람이 공중에 대하여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그의 고도의 사생활영역이 기술 또는 묘사된 경우, 그 피해자는 언론기업주(발행인)에게 그 피해 받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을 갖는다. 배상액수는 5 만 실링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밖에는 제 6 조 제 1 항 제 2 문이 적용된다.

2. 다음의 경우 제 1 항의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1) 피해자가 제 6 조에 의한 청구권을 갖는 때

(2) 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총회, 주의회 또는 이들 일반적 대표기관의 위원회의 공개회의의 심의에 관한 사실에 충실한 보고인 경우

(3) 공표가 진실하고 공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4) 피해자가 그 공표를 양해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제 8 조 공동규정

1. 피해자는 언론기업주(발행인)가 피고인으로서 또는 제 41 조 제 5 항에 따라 관여된 형사소송절차에서 본안 변론 또는 심리가 종결되기까지 제 6 조 또는 제 7 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형사소송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 41 조 제 2 항에 의해 관할권 있는 형사법원에 독자적인 신청으로써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 1 심의 심리와 재판은 단독판사가 처리한다. 신청은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전파의 개시 이후 6 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제 6 조 제 2 항 및 제 7 조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4 호의 예외 사유는 언론기업주(발행인)가 증 하여야 한다. 그에 관한 증거는 언론기업주(발행인)가 주장한 예외사유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3) 독자적인 신청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은 사소인(Privatkläger)으로서의 권리를, 피신청인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심리의 공개는 고도의 사생활영역의 사실이 논의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서도 배제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판결에는 14 일간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 판결의 이유 및 액수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있다. 인용판결은 강제집행법상 집행력 있는 정본의 효력이 있다. 그밖에 독자적인 신청에 관하여는 사소(Privatkläger)에 의한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제 9 조 반론권(Entgegnung)

1. 정기적인 언론매체에 의해 전파된 사실보도에 의해 개별적으로 언급된(nicht bioßallgemein betroffen) 개인 또는 법인(관청)은, 반론이 진실이 아니거나 반론의 보도가 다른 이유에서 배제되지 않는 한, 해당 언론매체에 무료로 반론의 보도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 반론이 허용되는 사실보도는, 그 성질에 따라 그 정확성(Richtigkeit)과 완전성(Vollständigkeit)의 심사가 가능하고, 그 본질적 발언(wesentliche Aussage)이 단지 개인적인 의견표현, 가치평가 또는 타인의 미래행위에 대한경고가 아닌, 진술(Angabe)이다.
3. 반론은 사실보도가 틀렸다거나, 오해하도록 불완전하여, 마치 그와 같은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같은 서술에 국한되어야 하고, 사실보도에 반하여 옳다고 주장된 사실 또는 사실보도를 중요한 점에서 보충하는 사실의 주장에 국한되어야 한다. 반론은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행해질 수 있다. 반론은 이의의 대상이 된 보도에 쓰여진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형사절차의 경과에 관한 추후보도(nachträgliche Mitteilung)

1. 정기적인 언론매체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거나 형사절차가 개시되었다고 보도된 자의 요구가 있으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형사절차가 유죄판결 이외의 형태로 종결될 때에는, 해당 정기적인 언론매체는 그에 관하여 무료로 보도하여야 한다.
2. 추후보도는 그 내용이 요청된 권리보호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되며, 관계된 보도에 쓰여진 언어와 동일한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추후보도의 정당성은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 등본의 제출 또는 특별한 직무상 증명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에 의한 그 증명서의 발급은 공소취소의 경우에는 검사, 기타의 경우에는 형사법원이 행할 의무가 있다.

제 11 조 보도의무의 배제(Ausschluß der Veröffentlichungspflicht)

1. 다음의 경우에는 반론 또는 추후보도의 의무가 없다.
 - (1)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총회, 주의회 또는 이들 일반 대표기관의 위원회의 공개회의의 심의에 관한 사실에 충실한 보고에 대한 것인 때
 - (2) 반론이 영업적 거래를 위한 광고로 표시된 것에 대한 것인 때
 - (3) 반론이나 추후보도가 법률상 의무에 따라 행해진 사실보도에 관한 것인 때
 - (4) 개별적인 부분에 있어서라도 신청된 반론의 내용이 진실이 아닌 때

- (5) 피해자(Betroffene)에게 사실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 때
- (6) 반론의 대상이 되는 보도가 피해자의 주장도 표현(widergeben)하고 있으며 그것이 반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때
- (7) 당해 보도 또는 동등한 다른 보도에서 피해자에게 반론을 위한 적절한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은 때
- (8) 반론의 제기 이전에 편집상 이미 동등한 정정 또는 보충이 보도된 때
- (9) 반론의 보도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청구에 의해 이미 중요한 점에서 동일한 내용의 적법한 반론이 동등하게 보도된 때
- (10) 사실보도가 행해진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반론이, 피해자가 공소취소 또는 절차종결을 안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추후보도가, 언론기업주(발행인) 또는 언론기업의 편집부에 접수되지 아니한 때, 정기적인 언론제작물에 발행일의 표시가 있는 때에는 그 호수에 게재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접수되는 신청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반론의 보도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거나 고도의 사생활영역에 대한 침해를 나타내는 때에는 반론의 보도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게재의 요청

- 1. 반론 또는 추후보도문의 게재의 요청은 서면으로, 언론기업의 소유자(발행인) 또는 언론기업의 편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론권으로서, 정지사진 또는 활동사진의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함에 있어서 이에 적합한 사진을 첨부할 수 있다.
- 2. 위 게재의 요청에 대하여는, 당해 언론매체에 늦어도 제 13 조에 규정된 시점까지에 동등한 가치가 있는 편집상의 정정, 보충 또는 기타 보도를 공표함에 의하여, 그 응답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언론기업의 소유자(발행인) 또는 편집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 13 조 보도의 시점 및 형태

- 1. 반론 또는 추후보도는 매일 또는 주 5 회 이상 발행되거나 송출되는 언론매체에서는 5 작업일 이내에, 그 밖의 경우에는 요청서가 제출된 후 최초 또는 2 번째 호수나 송출시에 행해야 한다. 동일한 부록, 연재기사 또는 연속물에 의하는 것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보도청구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본 시점 이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행해야 한다.
- 2. 그 보도에는 「반론」 또는 「추후보도」 라고 표시해야 한다 거기에는 피해자의 성명과 대상이 된 호수 또는 방송물을 지적해야 한다.
- 3. 반론 또는 추후보도는 그 공표(Wiedergabe)가 그 대상으로 된 보도와 동일한 보도효과를 갖도록 행해야 한다. 정기적인 언론매체가 여러 판(Ausgabe)으로 발행되거나 여러프로그램에서 송출되는 때에는 이의대상인 사실보도가 행해진 판 또는 프로그램에서 행해져야한다.
- 4. 정기적인 인쇄물의 경우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사실보도와 동일한 부분에 동일한 활자로 행해지면 동일한 보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5. 방송 또는 기타 이와 기술상 동등한 매체의 경우, (반론등의) 보도는 아나운서가 문면을 낭독하여 행한다. 한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사실보도가 행해진 경우에 반론 또는 추후보도는 가장 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1 회 보도함으로써 족하다.
6. 사실보도가 영상묘사와 함께 행해졌고, 반론으로 의도된 권리의 보호가 영상표현을 요하는 경우, 반론은 정지화면 또는 활동화면의 형태로 행해야 한다.
7. (반론등) 보도는 제한 및 삭제 없이 행해야 한다. 첨가한 것도 명료히 없애야 한다.

제 14 조 법원의 절차

1.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전면 또는 적합하게 행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6 주 이내에 언론기업 소유자(발행인)를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반론 또는 추후보도 게재의 명령(Anordnung)을 신청할 수 있다. 위 기간은 피해자에게 서면에 의한 거부통지가 있던 때, 반론이나 추후보도가 부적합하게 행해진 때 또는 반론이나 추후보도가 최종적으로 행해졌어야 했을 때(이행 최종의 시점)로부터 진행한다.
2. 제 1 항의 신청은 제 41 조 제 2 항에 기재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 1 심의 심리와 재판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3. 제 1 항의 신청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은 사소인(Privatkläger)으로서의 권리를, 상대방은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형사소송법 제 455 조 제 3 항이 적용된다. 그밖에도 제 1 항의 신청절차에는 이하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소절차에 관한 1975 년의 형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된다.
4. 법원은 지체없이 위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5 일 이내에 답변(Einwendung)과 증거를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그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위 신청이 인용됨을 알려야 한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다시 신청인에게 송달하고 그에 대한 재답변과 증거를 5 일 내에 제출시킨다.

제 15 조

1. 법정기간 내에 답변서의 제출이 없으면 보도신청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은 5 일 이내에 변론 없이 결정으로써 신청을 인용하여야 한다.
2. 신청상대방이 자신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에 지장이 있었던 때에는 그의 신청에 따라 추완을 허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64 조를 준용하되, 추완신청기간은 제 1 항의 결정 송달 후 5 일로 하고, 위 결정 법원이 추완의 허부를 결정한다.
3.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재답변서 제출 후 또는 이를 위한 기간 경과 후 14 일 이내에 공개구두변론을 거쳐 판결하여야 한다. 고도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사실이 논의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도 비공개로 심리할 수 있다.
4. 신청의 상대방은 보도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반론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되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 요구되는 증거가 결정의 법정기간 내에 조사될 수 없거나 반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라고 볼 입증에 충분치 못하면 그 주장만으로는 반론전체 또는 그 일부분의 보도명령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5. 판결이 반론의 허위주장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만 항소할 수 있다.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인용된 경우 항소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 16 조 사후의 재심절차(Nachträgliche Fortsetzung des Verfahrens)

1. 법원이 제 15 조 제 3 항에 따라 판결에서 반론의 허위성(Unwahrheit)에 관한 항변을 판단한 경우 신청인이나 상대방의 신청이 있으면 재심절차를 열어야 한다. 위 신청은 판결확정 후 6 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재심절차(fortgesetzte Verfaon)는 반론이 허위라는 항변 및 유보된 벌금재판에 국한되며, 그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수 있다. 위 신청에 대하여는 공개구두변론에 의한 판결로써 재판하여야 한다.
2. 재심절차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되었어야 함이 판명되면 종전판결의 취소를 선고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이미 반론을 보도한 후라면 그의 신청에 따라 제 13 조에 상응하는 형태로 적절한 기간 내에 그 판결내용을 보도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 신청인에 대하여는 상대방에게 위 판결내용의 보도 및 종전의 판결에 기하여 행한 보도를 위한 적절한 비용의 지급과 소송비용의 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그밖에 위 재판에는 14 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위 재판은 강제집행법상 채무명의회가 된다.

제 17 조 법원의 보도명령

1. 반론이나 추후보도가 보도되지 아니하거나 적절히 보도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보도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 반론이나 추후보도의 개별부분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은 보도할 반론 또는 추후보도의 부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반론이나 추후보도의 일부분이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의미내용의 변경 없이 자구 표현의 수정으로 개선 가능하다면 법원은 변론에서 신청인에게 반론 또는 추후보도를 수정하도록 종용하고 수정된 형태로 보도를 명해야 한다. 보도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면 보도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2. 수정된 형태의 보도가 인용되었고 그 보도의 문면(Wortlaut)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판결선고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문면의 처분을 맡겨야 한다.
3. 법원이 명령한 보도는 제 13 조를 준용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4. 제 1 심 판결에 의하여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행해졌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 13 조에 상응하는 형태로 항소심 판결을 보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또 법원은 신청인에게 위법하게 강제된 반론 또는 추후보도 및 항소심 판결의 보도를 위한 삽입비용의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곤란한 경우 법원은 공정한 재량에 의해 삽입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제 16 조 제 2 항의 최후 두 문장은 이에 적용된다.

제 18 조 벌금(Geldbuße)

1. 반론이 보도되지 않거나 부적합하게 보도되거나, 지체되어 보도된 것이 위법한 경우에는 거기에 언론기업주(발행인) 및 보도 권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지 않은 한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이 신청인에게 벌금을 지급할 것을 명해야 한다. 위 귀책사유가 없다는 사정은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2. 벌금은 반론보도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 15 조 제 4 항 2 문에 따라 반론의 내용이 허위라는 항변이 있으면, 신청된 벌금에 관한 재판은 사후의 재심절차에 유보된다. 지체된 보도를 이유로 한 벌금에 관하여 법원은 제 14 조 제 4 항을 유추하여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벌금이 결정으로 재판된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3. 벌금액수의 결정에 있어서는 귀책사유와 정도, 사실보도의 영향 및 지체된 정도와 언론기업의 경제적 이행능력을 참작하여야 한다. 지체된 보도의 경우와 제 15 조 제 1 항의 절차에서 결정된 경우 벌금은 5 천 실링을, 기타의 경우에는 2 만 5 천 실링을 초과할 수 없다.

4. 벌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14 일의 이행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 인용판결은 강제집행법상 채무명의를 가진다.

제 19 조 소송비용

1. 신청인의 보도신청이 전부 승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2. 다음의 경우 법원은 공정한 재량으로 소송비용의 부담자와 비율을 정한다.

(1) 반론의 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수정된 후 인용된 경우

(2)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의 일부만이 인용된 경우

(3)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지체되었으나 적합한 것이었다거나 편집상 동등한 정정 또는 보충이 행해졌음(제 12 조 제 2 항)을 이유로 보도신청이 기각되었고, 이들 경우 신청인이 제소 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3. 기타의 경우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규정들은 벌금에 관한 사후 재심절차에도 준용된다.

제 20 조 보도의 집행

1.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인용되었는데 법원의 보도명령이 적시에 또는 적합하게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을 신문한 후 결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적합한 반론의 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하지 않으면 제 13 조 제 1 항(제 17 조 제 3 항)에 계기한 시점부터 발행되는 매 호수 또는 매 송출일마다 5 천 실링 이내의 벌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위 신청은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행해져야 할 종기 또는 적합하지 않게 보도된 때로부터 6 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반론 또는 추후보도가 적합하게 행해지면 즉시, 법원은 고려해야 할 경우,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미지급된 벌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 21 조 침해방송(Belangsendung)

오스트리아방송공사(ORF)의 임무와 제도에 관한 1974. 7. 10 의 연방법 (BGBl. Nr, 397) 제 5 조의 침해방송에 대한 반론 또는 추후보도에 관하여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제 9 조 내지 제 20 조가 적용된다.

(1) 신청방송에 대한 반론 또는 추후보도는 침해방송의 작성자에게 허락된 송출시간 중에 보도신청 제출 후 최초의 또는 두 번째의 송출기일에 보도하되 보도신청 후 1 주일 이내에 위 기일이 없으면 그 후 최초의 기일에 보도하여야 한다.

(2) 제 14 조 제 1 항의 상대방은 침해방송을 작성한 정당 또는 이익단체이다.

(3) 제 20 조 제 1 항의 송출일은 상대방이 허락받은 송출일로 대체된다. 제 22 조 라디오 및 영화의 녹음(화) 금지법원의 공개된 심리에 관한 TV, 라디오의 녹음(화) 및 중계와 영화촬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3 조 형사소송에 대한 영향의 금지

기소상태가 확정된 후의 법원의 형사절차 중 또는 제 1 심 단독 판사의 절차나 본안의 공판명령 후 구법원의 절차에 있어서, 제 1 심판결전에 언론매체에 형사절차의 결과에 영향 미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형사절차 결과의 예상이나 증거의 평가를 논한 자는 법원에 의해 180 일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 4 절 필요적 게재사정, 공시 및 표시

제 24 조 필요적 게재사항(Impressum)

1. 모든 언론제작물에는 언론기업주(발행인) 및 제작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발행지 및 제작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모든 정기적 언론제작물에는 그 외에 언론 기업주(발행인) 및 언론기업의 편집국의 소재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언론제작물에 내용목차를 싣는 경우에는 필요적 게재사항의 수록면도 표시하여야 한다.
3. 필요적 게재사항의 공표의무는 제작자가 진다. 언론기업주(발행인)는 제작자에게 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5 조 공시의무

1. 모든 정기적 언론매체의 언론기업주(발행인)는 매년 제 2 항 내지 제 4 항에 제기한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언론제작물의 경우 이 공표는 최초의 발행호와 매년 1 월에, 1 월에 발행이 없으면 그 해 최초의 발행호에 필요적 게재사항 다음에 행해야 한다. 기타의 정기적인 언론매체의 경우에는 보급 이후 1 월 이내 및 매년 1 월에 비엔나 신문의 관보란에 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공시사항은 성명 또는 상호, 영업대상, 주소, 소재지 또는 지사 및 언론기업주(발행인)의 자본참여 정도와 그가 회사나 사단인 때에는 출자 또는 기본투자가 25%를 넘는 업무집행자, 이사회 및 감독위원회(Aufsichtsrat)의 구성원 및 업무집행사원(Gesellschafter)이다. 업무집행사원 자신이 회사인 때에는 제 1 문을 유추하여 그 업무집행사원도 공시하여야 한다. 간접적인 자본참여(mittelbare Beteiligung)가 50%를 넘는 경우에는 위 규정들을 유추하여 그 간접투자자도 공시하여야 한다.
3. 위 규정에 따라 공시될 자가 동시에 다른 언론기업 또는 통신업의 기업주이거나 그러한 기업에 제 2 항에 기재한 방법과 범위에 따라 자본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상호, 영업대상 및 소재지도 표시하여야 한다.
4. 나아가 정기적인 언론매체의 기본방향(grundlegende Richtung)에 관한 선언도 공시하여야 한다. 기본방향에 관한 제 2 조의 변경 및 보충은 공시된 후에야 효력을 갖는다.

제 26 조 대가를 받고 하는 보도의 표시

정기적 언론매체에서 보도에 반대급부가 이행되는 고지, 권고 및 기타 보고는 그 구성이나 배열상, 대가를 받고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광고」(Anzeige), 「대가적 삽입」 또는 「선전」(Werbung)이라고 표시되어야 한다.

제 27 조 행정범(Verwaltungsübertretung)

1. 다음의 자는 행정범을 범한 자로서, 구행정청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지가 연방경찰의 관할구역내인 경우에는, 연방경찰에 의하여) 1 만 실링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필요적 게재사항 또는 제 25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제기한 사항을 공표할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적기에 이행치 않고 또는 공표시에 틀렸거나 불완전한 사항을 행하거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

(2) 언론기업주 (발행인) 또는 책임있는 수권자로서 제 26 조의 규정에 반하여 고지, 권고 기타기사 및 보고가 공표되도록 한 자

2. 토지관할의 기준은 제 24 조 위반의 경우 제작지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언론기업의 소재지이며, 언론기업에 의해 보급되는 매체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지를 표준으로 한다.

제 5 절 형사규정

제 28 조 언론법상의 책임

언론내용범(Medieninhaltsdelikt)에 대한 형사책임은 이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일반형법에 의해 정해진다.

제 29 조 기사로서의 주의의무의 준수(Wahrnehmung Journalistischer Sorgfalt)

1. 언론기업주(발행인) 또는 언론종사자(Medienmitarbeiter)는 진실증명(Wahrheitsbeweis)이 허용되는 언론내용범에 있어서 진실증명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보도에 관하여 우선적인 공공의 이익이 있었고 기사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함으로써 그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을 충분한 근거(이유)가 존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고도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언론내용범에 있어서 언론기업주(발행인) 또는 언론종사자는 그 주장이 진실하고 공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 할 수 없다.

2. 위 증거는 피고인(Beschuldigte)이 원용하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다. 제 1 항 1 문의 경우 법원은 기사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제공되고 허용되는 진실증명을 채용할 수 있다.

3. 제 1 항 1 문에 제기한 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 법원은 제 34 조를 준용하여 진실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실패 하였다는 확인의 공표와 피고인이 위 공표의 비용을 포함한 형사소송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형법 제 111 조 제 3 항 및 제 112 조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30 조 의회보도

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총회, 주의회 또는 이들 일반대표기관의 위원회의 공개회의에 있어서의 심의에 관한 진실에 충실한 보고(wahrheitsgetreue Berichte)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 31 조 편집의 비밀(Redaktionsgeheimnis)보호

1. 언론기업 및 통신업의 언론기업주(발행인), 간행인, 언론종사자와 근로자는 법원 또는 행정관청의 절차에서 증인으로 기사(Beitrag)및 자료의 작성자, 제출자 또는 보관자의 신원이나 그들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행해진 제보(Mitteilung)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절할 권리가 있다.

2. 제 1 항에 제기한 권리는, 특히 위 권리자에게 서류, 인쇄물, 녹음대나 녹화대 또는 입력된 자료(Datenträger), 복사와 기타 그러한 내용을 갖는 설명의 제출명령이나 압수의 방법에 의하여도 침해될 수 없다.

3. 형사소송법 제 149 조의 a 제 1 항 제 2 호에 의한 언론기업의 전화설비에 대한 감시를 위한다청은, 형사절차가 무기징역 또는 단기 5 년 이상이고 장기 10 년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한 것일 때에만 허용된다.

제 32 조 공소시효

언론내용범의 공소시효기간은 내국에서의 전파가 시작된 때에 개시하며, 형법 제 58 조 제 1 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공소시효기간은 1 년으로 하되 3 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 57 조 제 3 항에 의한다.

제 33 조 몰수

1. 언론내용범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기소자(Ankläger)의 신청에 따라 전파목적의 언론 제작물의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446 조에 불구하고 제 29 조 제 3 항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같다.

2. 언론매체에 가벌적 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한추궁이 집행 불능하거나 유죄판결이 형벌배제사유의 존재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소자의 신청이 있으면 독립적인 절차에서 몰수를 선고하여야 한다. 본범(Täter)이 진실증명이 있어 불가벌적인 경우, 위 증명은 제 29 조의 준용에 의해 관계인(제 41 조 제 5 항)으로서의 언론기업주(발행인)에게도 허용된다(offenstehen)

3. 독립적인 절차에 의해 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사소권자의 권리는 그가 가벌적 행위와 그에 대해 특정인이 추궁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될 수 없는 사정을 안 날부터 6 주가 경과하면 소멸한다.

4. 몰수를 하는 대신에, 언론기업주(발행인)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적절한 기간 안에 일부분의 분리, 청부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가벌적 행위의 원인이 된 부분을 언론제작물의 추후전파에서 인식할 수 없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5. 독립적인 절차에서 몰수가 선고되는 경우 그 절차의 비용은 언론기업주(발행인)가 부담한다.

제 34 조 판결의 공고(Urteilsveröffentlichung)

1. 언론내용범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기소자의 신청에 따라 가벌적 행위와 그에 대한 판결에 관하여 공공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판결부분의 공고를 명하여야 한다. 공고할 판결부분은 판결선고 시에 적시하여야 한다.

2. 비유적 명예훼손(Verleumdung), 명예에 대한 범죄의 경우 또는 기타 형사 처벌되는 행위가 사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사정이나 사실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범죄의 처벌에 수권이 불필요하거나 이미 주어진 때라 하더라도 피해자의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판결의 공고를 명할 수 있다.

3. 특정인의 처벌이 집행불능하거나 그 유죄판결이 형벌배제사유의 존재때문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독립적인 절차에서 판결의 공고를 명하여야 한다.

4. 언론내용범이 정기적인 언론매체에서 범해진 때에는 그 판결의 공고는 제 13 조를 준용하여 당해 언론매체로 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판결이 확정되고 송달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그 집행에 관하여는 제 20 조를 준용한다.
5. 언론내용범이 범해진 정기적인 언론매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거나 언론내용범이 정기적인 언론매체가 아닌 매체 또는 외국의 언론매체에 의해서 범해진 경우에는 다른 정기적인 언론매체에 공고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판결공고의 비용은 형사절차의 비용에 속한다. 그 집행에 관하여는 제 46 조를 적용한다.

제 35 조 책임

1. 언론내용범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는 정기적인 언론매체의 언론기업주(발행인)에 대하여 벌금형 과 판결공고비용을 포함한 절차비용에 대한 유죄판결자와의 공동책임을 선고하여야 한다.
2. 위 책임이 명해진 판결 또는 제 8 조에 따른 판결의 선고 후에 언론기업주(발행인)가 교체된 때에는 후자가 전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3. 보충적인 자유형[형법 제 19 조 제 3 항 벌금의 환형유치]은, 언론기업주(발행인)에게 대해서까지도 벌금형이 집행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36 조 언론제작물의 압수

1. 법원은 제 33 조에 따라 몰수가 선고된다고 인정되고 압수에 의한 불리한 효과가 압수으로써,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보다 현저하게(unverhältnismäßig) 무겁지 않은 경우 전파를 목적으로 한 언론제작물의 압수를 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절차의 개시에 대한 보고의 공표으로써 위 권리보호의 이익이 충족될 수 있는 때에는 어느 경우에도 압수는 부적법하다.
2. 압수는 언론내용범에 대한 형사절차나 독립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개시되고, 기소자나 독립절차의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압수를 신청할 것을 전제로 한다.
3. 압수를 명하는 결정(Beschluß)에는 그 대상으로 하는 언론제작물의 게재면과 표현 및 압수가 명해지는 혐의 있는 범죄에 관하여 적시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제 4 항은 준용된다.
4. 압수의 재판은 상급법원에 항고하여 다룰 수 있다. 그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5. 동일한 언론제작물에 대한 여타의 표현을 이유로 한 동일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새로운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37 조 소송절차에 관한 보도

1. 제 36 조 제 1 항 2 문에 의해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법원은 기소자 또는 독립적인 절차의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개시된 형사절차에 관한 간략한 보도를 명할 수 있다.
2. 제 1 항에 의한 신청자는 언론제작물의 압수 대신에 애초부터 제 1 항의 보도를 신청할 수 있다.
3. 제 34 조와 제 36 조 제 4 항은 준용된다.

제 38 조 전파금지 및 보도금지

1. 압수의 효력이 지속되는 동안 당해 언론제작물을 그 가벌적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전파하는 것과 가벌적 행위의 혐의를 정당화시키는 부분 또는 연출을 새로이 보도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제 1 항에 위반하여 언론 제작물을 전파하거나 압수의 근거가 된 내용을 보도한 자는 법원에 의해 90 일분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 39 조 부당한 압수에 대한 보상

1. 법원이 몰수를 선고함이 없이 압수가 취소된 경우 연방은 언론기업주(발행인)의 청구에 따라 압수 및 전파금지에 의해 발생한 재산법상의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2. 제 37 조에 의해 보도가 행해지고 거기에 언급된 절차가 몰수의 선고 없이 종료된 경우에는 언론기업주(발행인)에게 그에 관한 간략한 보도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 그 보도는 제 13 조에 상응하는 형태로 행해야 한다. 그 보도를 위한 비용은 연방이 부담한다. 나아가 연방은 제 37 조에 따른 보도를 위한 통상의 삽입 대가를 지출하여야 한다.

3. 압수 또는 제 37 조의 보도가 사소인의 신청을 근거로 선고되고, 사소인이 그 신청에 즈음하여 양심에 반하여(wider besseres Wissen) 행동했거나, 자기의 형사상 청구권의 추궁이나 몰수신청을 해태한 경우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배상한 연방은 사소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4. 그밖에 국가배상법(Amtshaftungsgesetz, BGBl. Nr.20/1949) 제 5 조, 제 6 조 제 2 항, 제 7 조, 제 8 조 제 9 조 제 1 항 및 제 2 항과 제 10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은 다음과 같이 준용된다.

(1) 언론기업주(발행인)는 여타의 권리상실의 경우 형사절차 또는 독립적인 절차의 종료 확정 후 3 월 이내에 재정지출관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2) 보상청구권은 언론기업주(발행인)에게 재정지출관의 거절의 의사표시가 송달되거나 3 개월간의 의사표시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3 개월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5. 국가배상법의 규정은 전항규정들에 의해 영향 받지 아니한다.

제 40 조 범죄지

1. 언론제작물로 범해진 언론내용범의 행위지(Tatort)는 발행지로 하며 발행지가 외국이면 당해 언론제작물이 국내에서 최초로 전파된 장소로 한다. 위 장소나 발행지를 알 수 없으면 제작지를 행위지로 한다. 제작지도 알 수 없거나 제작지가 외국이지만 언론제작물이 국내에서 전파되었으면 행위지는 국내에서 언론제작물이 전파된 곳으로 본다.

2. 방송프로에 의해 언론내용범이 범해진 경우 행위지는 당해 방송프로가 최초로 송출된 곳을 행위지로 본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불구하고 영화에 의해 범해진 언론내용범의 행위지는 국내에서 그 영화가 공연된 곳으로 본다.

제 41 조 보충적인 절차규정

1. 언론내용범에 대한 형사절차와 독립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이하 다른 정함이 없으면 1975 년의 형사소송법 규정이 적용된다.

2. 제 1 항에 제기한 절차에 관하여는 그 관할구역 내에서 범해진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관할권 있는 주법원이 관할한다. 그 경우 주법원의 관할구역은 다른 주법원이 존재하는 주에 까지 미친다. 범죄지가 비엔나 또는 Niederösterreich 주이면 비엔나의 주법원 형사부가 관할한다. 위 법원은 처벌되는 행위가 내국 또는 외국방송 프로에 의한 경우에도 관할권이 있다.

3. 제 1 심 법원은 법정형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구법원에 관할권이 있어도 제 1 항에 계기한 절차에 있어서는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단독판사는 독립적인 절차에 있어서 참심 및 배심법원에 대신하여 심리 및 재판을 한다.
4. 제 1 심 법원의 단독판사의 절차에는 형사소송법 제 455 조 제 3 항이 적용된다.
5. 제 1 항에 계기한 절차에 있어서는 언론기업주(발행인)를 본만 변론 시 소환하여야 한다. 그는 피고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특히 피고인과 같이 모든 방어수단을 제출하고 본안에서 판결을 다룰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 불출석은 심리와 판결선고의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그 불출석 시에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이의 할 수 없다.
6. 몰수, 판결보도 및 책임에 관한 재판은 형선고의 일부분을 이루며, 피고인 또는 언론기업주(발행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불이익하게 항소로써 다룰 수 있다.

제 42 조 기소권한

한 정기적인 언론매체에 대하여 명예에 대한범죄가 행하여졌으나 공격대상이 되는 개인을 식 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행인(Herausgeber)은 기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6 절 도서관 납본

제 43 조 제공 및 납본의무(Anbietungs-und Ablieferungspflicht)

1. 언론기업주(발행인)는 국내에서 발행 또는 반포되는 모든 인쇄물 중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부수를 다음과 같이 납본 또는 제공하여야 한다.

(1)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과 행정명령으로 정하는 대학도서관, 연구도서관 또는 주립도서관에의 납본

(2) 의회도서관 및 연방수상부의 행정도서관에의 제공청약과 이들이 1 개월 이내에 요구하는 경우 자기 부담으로 송부함

2. 인쇄물이 외국에서 발행 · 반포되지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경우 제 1 항에 의한 제공 및 납본의무는 인쇄물의 제작자가 진다.

3. 정기적인 인쇄물의 경우 위 제공청약의무는, 최초의 발행 시에 그 인쇄물이 앞으로 계속하여 제공될 것으로써, 제시함으로써도 이행된다.

4. 도서관 및 부수의 결정에 있어서는 문헌화의 임무, 정보와 학문, 연구, 학설과 교습의 이익 및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국가적 구성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 관점 하에서 제 50 조 제 4 호에 규정한 성질의 특정종류 인쇄물은 직접적인 일일 목적을 넘는 정보내용을 이유로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에서의 납본이 명해질 수 있고, 특정 도서관이 그 임무이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특정 전문사항의 또는 특정 종류의 인쇄물은 특정 도서관에 대한 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정기적인 인쇄물의 경우(의무있는) 총 부수는 12 부를 초과할 수 없고 그 밖의 경우에는 7 부를 초과할 수 없다.

제 44 조 납본과 보상

1. 언론기업주(발행인)는 반포 개시 후 1 월 이내에 제 43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한 납본의무를, 제 43 조 제 2 항의 경우 제작자는 제작후 1 월 이내에 납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43 조 제 1 항 제 2 호의 제공청약의무도 같고 제공인쇄물의 송부에 대한 도서관의 요구에 대하여는 그 수령 후 1 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2. 제 43 조 제 2 항의 경우 납본이나 송부는 제작자로부터 인도된 형태로 하면 된다.

3. 판매가격이 1 천 2 백 실링을 초과하는 인쇄물을 6 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수령권 있는 기관은 판매가격의 절반을 보상하여야 한다. 복수의 개별적인 판매가능부분(권)으로 구성된 작품의 경우 그 판매가격이 상술한 금액을 초과하는 각 권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 45 조 집행

1. 도서관 부수가 적기에 납본 또는 제공 청약되지 않거나 제공할 부수의 송부요구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령권 있는 기관은 그 청구권 실현을 위하여 제 2 항에 기재한 관청에, 제 43 조에 의한 의무자에게 납본을 명하는 결정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 43 조에 의한 납본 또는 제공청약의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는 행정질서범으로 발행지 또는 제작지를 관할하는 구역행정 관청에 의해 1 만 실링의 벌금형에 처하여 지고, 위 지역이 연방경찰관청의 관할구역내인 경우에는 연방경찰관청에 의하여, 동액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 7 절 명령과 재판의 보도

제 46 조 보도의무(Veröffentlichungspflicht)

1. 광고를 게재하는 정기적인 언론제작물에는 그 발행부수 전부에 통상적인 삽입비용을 받고 다음 사항을 보도하여야 한다.

(1) 위기 및 천재지변의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즉각적인 연방 및 주관청의 경고와 명령

(2) 제 13 조 제 1 항에 기재한 시점에 당해 언론제작물에는 보도가 명해진 법원의 재판

2. 방송의 프로 중에는 관계 프로그램(채널)의 방송물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법원의 재판만을 보도하여야 한다. 보도의무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연방법률의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보도는 언론기업에 접수된 후 8 일 이내에 문안의 낭독으로 행해야 한다.

연방법률(BGBI.Nr.397/1974, 방송법) 제 5 조 제 2 항은 영향 받지 아니한다.

3. 법원재판의 보도는 삽입이나 삭제 없이 행해야 한다. 그에 대한 부가설명도 없어야 한다.

위 보도에는 제 26 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언론기업주(발행인)는 제 1 항 또는 제 2 항에 따라 행해야 할 중기부터 8 일 이내에 그 보도의 이행을 제 1 심 법원에 증명하여야 한다.

4. 보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언론기업주(발행인)는 행정질서 범으로서 언론기업의 소재지 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구역행정 관청에 의해 1 만 실링의 벌금에 처하여 지고, 위 지역이 연방경찰관청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연방경찰관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처하여 진다.

제 8 절 반포에 관한 규정

제 47 조 정기적 인쇄물의 반포(Verbreitung)

1. 정기적인 인쇄물은 여타의 법규정에 의한 제한과는 별도로 일정 장소에서 뿐 아니라 가두에서 그리고 처분권한자가 금지하지 않는 한 공공의 장소에서 반포될 수 있으나, 호구마다 판매될 수는 없다.
2. 정기적인 간행물은 가두 및 기타 공공의 장소에서 18 세 미만 자가 판매할 수 없고, 14 세 미만 자는 무료로 배부할 수도 없다. 14 세 이상 자에 의한 학교신문의 판매는 위 금지의 예외로 한다.
3. 공공의 장소에서 판매할 목적의 정기적인 인쇄물에는 각호마다 그 가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 48 조 인쇄물의 게시

공공의 장소에서의 인쇄물의 게시, 진열, 첩부는 관청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구역행정관청 및 연방경찰 관청의 관할구역 내인 경우에는 그 연방경찰관청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명령으로 일정지역에만 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49 조 행정질서범

제 47 조와 제 48 조를 위반한 자는 행정질서범으로서, 구역행정 관청에 의해 1 만 실링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고, 연방경찰관청의 관할구역내인 경우에는 연방경찰관청에 의하여 위 벌금에 처하여 진다.

제 9 절 적용범위

제 50 조

본법의 여타 규정을 제외하고 제 1 조, 제 23 조, 제 28 조 내지 제 42 조, 제 43 조 제 4 항, 제 47 조 제 1 항 및 제 2 항, 제 48 조와 제 49 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한다.

- (1) 외국언론기업의 언론매체, 단 당해 언론매체가 그 전부 또는 거의 전적으로 그 국내에서 반포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2) 외국에 의해 발간 또는 발행된 언론제작물, 오스트리아에 파견 또는 함께 파견된 외교사절, 오스트리아에 설치된 영사대표부 또는 오스트리아가 가입했거나 공식적 관계를 갖는 초국가적 또는 국제적 기구에 의해 발간 또는 발행되는 언론제작물.
- (3) 국민의회, 연방의회, 연방총회나 주의회 또는 공행정이나 재판권의 임무수행을 위해 관청이 발간 또는 발행되고 직무상 식별할 수 있는 언론 제작물과 위 요건이 갖추어진 직무상 식별할 수 있는 언론제작물 부분
- (4) 학교신문과 교통상, 가사의, 동료간의, 문화적, 학문적이거나 종교적 생활에서, 단체 내에서, 경제생활 내에서 한 직무 또는 이익 대표의 활동 테두리 안에서 또는 기타 유사한 활동에 있어서 보조수단으로 쓰이는 언론매체

제 2 장 언론매체의 평가권

언론계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있는 단체는 일정한 기간 내에 언론계에 관련되는 법률 및 명령의 초안에 관하여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는다.

제 3 장 방송법의 개정 (생략)

제 4 장 자료보호법의 개정 (생략)

제 5 장 시행

1. 본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제 6 장 경과규정 (생략)

제 7 장 위임

본법의 시행은 다음과 같이 위임된다.

- (1) 제 2 조 내지 제 5 조와 제 6 장 제 1 항은 연방법무장관과 연방사회행정장관
- (2) 제 1 조, 제 6 조 내지 제 26 조, 제 28 조 내지 제 44 조, 제 46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 제 50 조와 제 5 장, 제 6 장 제 2 항 내지 제 8 항은 연방법무장관
- (3) 제 27 조, 제 45 조, 제 46 조 제 4 항과 제 49 조는 연방내무장관
- (4) 제 47 조와 제 48 조는 연방내무장관과 연방법무장관
- (5) 제 2 장은 연방수상과 연방전체각료
- (6) 제 3 장과 제 4 장은 연방수상